

변론 요지서

죄 명 철도법위반 등

피 의 자 김도현 ([REDACTED])

본적 : 서울시 성북구 [REDACTED]

주소 : 서울시 성북구 [REDACTED]

연락처 : [REDACTED]

현 근무지 : 인권운동연구소(Tel : [REDACTED])

위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의자의 인적 사항

가. 피의자는 1974년 6월 1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모두 생존해 계시며(父: 김남두, 68세 母: 최운정, 58세), 컴퓨터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형님(兄: 김영래, 32세)이 한 분 있습니다.

나. 피의자는 본래 중학교 때부터 교사의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과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93. 당시 집안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학비가 들지 않고 취업이 보장되는 세무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었던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 그해 세무대학교를 자퇴하고, 약 2년 반 동안 학습지 외판원, 청소미화원, 식당 주방일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과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6. 3. 다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 피의자는 대학교 시절, 학교 생활은 물론 장애아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학교에 자원활동도 나가고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던져 준 것은 최근까지 7년 동안 계속되었던 평택의 에바다 복지회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억 원대에 이르는 공급횡령, 장애아동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의문사, 작업장에서의 임금착취 등 도저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비리로 점철되었던 에바다 문제를 접하면서 피의자는 예비 특수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7.부터 2001. 2. 졸업할 때까지 '절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때의 활동과 관련해서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24

라. 또한 피의자는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을 알게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2000. 8. 부터는 위 노들장애인야학의 상근자원활동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피의자에게 있어서 특수교사로서의 꿈과 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마. 피의자의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로서의 활동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01. 1. 22.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위 사고로 박소엽씨는 사망하고 고재영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장애인계는 이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결성한 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노들장애인야학도 위 연대회의의 소속단체로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또한 이러한 활동에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 피의자는 이처럼 장애인야학의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철학을 풍부하게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인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부설 연구소인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근연구원으로 지원을 해서 2003. 2.부터 지금까지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근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배경 -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에 대하여

가.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생존권 침해의 근거에는 늘 장애인이동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 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 시 전체 장애인의 64.5%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1>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단위 : %,명)

교육정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체
매우불편	28.7	59.3	35.2	17.7	15.8	20.8	28.2	16.0	25.2	40.0	31.7
약간불편	36.1	26.4	30.4	31.9	33.4	23.0	26.5	27.6	48.7	44.6	32.8
불편않은 편	9.5	5.7	7.9	9.8	6.1	13.5	3.9	7.0	3.3	5.5	8.6
전혀불편않음	25.7	8.6	26.5	40.6	44.7	42.7	41.4	49.4	22.9	9.8	2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730)	(502)	(493)	(443)	(84)	(264)	(26)	(125)	(67)	(119)	(3,853)
전국추정수	576,396	179,248	174,167	143,129	25,952	89,019	11,381	40,618	25,150	42,424	307,484

註: 비해당 268명, 무응답 4명 제외

자료 : 卞俗榮 외, 「2000년도 障碍人 實態調査」(서울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p.173

그리고 집박에서의 활동 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과 각종 건축물의 편의시설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52.5%, 계단·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이 59.0%)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PAS : Personal Assistant Service)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몸이 불편해서가 76.1%, 외출시 동반자가 없음이 34.6%¹⁾)

<표2> 재가장애인의 집박 활동시 불편사항

(단위 : %,명)

불편 이유	응답률	(N)	전국추정수
건물 등 화장실의 편의시설 부족	28.2	(846)	268,809
계단,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0	(1,662)	563,280
출입구, 출입문의 편의시설 부족	23.2	(654)	221,793
점자블럭, 교통신호 편의시설 부족	15.5	(440)	149,261
관람, 열람석의 편의시설 부족	7.0	(196)	66,344
자판기, 매표소의 편의시설 부족	8.9	(249)	84,554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 부족	52.5	(1,478)	501,097
외출시 동반자가 없음	34.6	(975)	330,583
주위 사람들의 시선	42.6	(1,201)	406,972
몸이 불편해서	76.1	(2,142)	726,000

註: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 卞俗榮 외, 「2000年度 障碍人 實態調査」(서울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p.173

일반인들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²⁾

- 1) 외출시 동반자가 없음, 몸이 불편해서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응답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제도와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사회적 장애)가 함께 포함된 응답이라고 보아야한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나 환경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바뀔 수 있다면,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동권과 연동되어 제기되는 접근권(Access to Rights)은 이동권보다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동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권, 다양한 문화적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라는 것이 그다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늘상 공기를 마시고 있기에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동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 다니며,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제약된, 그리고 열악한 이동권의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전체 장애인구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³⁾, 70%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⁴⁾ 즉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의 문제는 곧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여러차례 장애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동권의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장애인의 생명권을 박탈해왔습니다. 이동권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오이도역에서의 박소엽(71, 여, 지체3급)씨 추락사망 사건, 2002년 5월 19일, 발산역에서의 윤재봉씨(지체 1급, 63세) 추락사망 사건을 비롯해, 올해 5월 14일에도 송내역에서의 장영섭씨(시각장애 1급, 58세)의 추락 사망사건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6월 28일, 4호선 혜화역 이규식씨 리프트 추락사건(부상) ; 1999년 10월 4일, 5호선 천호역 이흥호씨 리프트 추락사건(부상) ; 2001년 7월 18일, 2호선 영등포구청역 이동석씨 리프트 추락사건(중상) ; 2001년 9월 16일,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환승통로 노판수씨 리프트 추락사건(중상) ; 2003년 4월 24일,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시각장애인 부부 추락사건(부인은 임신 8개월, 두 사람 골절 등 중상) ; 2003년 5월 10일, 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p.141

4) 한국기능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74%가 실업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이규식씨 추락사건(전치 3주 부상)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들도 일상적으로 이동권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1, 2급의 중증 장애인인 노들장애인야학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일상에서 늘상 부딪칠 수밖에 없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인 이동을 위해서 12인승 승합차의 뒷자석을 없애 휠체어를 싣고 학생 분들의 통학에 이용하고 있지만, 결석생이 없는 날이나 이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개인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학생분들의 등·하교에는 항상 전쟁을 치르는 듯한 상황이 벌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의 거주지가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어 6시에 시작되는 수업을 위해 승합차량은 3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처음 승차한 학생 분은 혼자 이동할 수 있다면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리에 있는 야학에 오기 위해 3시간 이상을 차안에서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노후한 차량이 고장이라도 나는 날이면 야학의 수업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포화상태에 이른 수송능력으로 인해, 늦게나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분들도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행사를 위해 야학 학생분들 전체가 움직이는 날이면 장애인을 고려치 않고 구축된 한국 사회의 구조로 인해, 그 날 행사 자체보다 어떻게 이동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주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야학일 현실일 뿐만 아니라, 위 사고 사례에서 언급되었던 이규식씨(남, 32세, 지체장애 1급)와 이홍호씨(남, 31세, 지체장애 1급)씨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분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3. 이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역할 (장애인단체의 5.28 지하철 선로점거경위와 피의자의 참여 경위)

가. 이 사건 당시 2003. 5. 14. 발생한 송내역 장영섭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어떤 국가기관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2. 5.19. 발생한 발산역 사고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에 대해 계속해서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때까지도 아무런 공식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연이은 사고와 그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에 대해 항의하면서 5. 28. 광화문역 선로 점거에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이동권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피의자 역시 장애인이동권의 현실과 연이은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수교사이자 장애인운동의 활동가로서, 인권운동연구소 상근연구원으로 근무한 후에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일상적으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5. 26. 광화문역에서 선로점거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E-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과 다소 위험한 투쟁인데 별탈이 없을까 걱정이 함께 겹쳐,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날 12시경 광화문 역에 도착했는데 현장에는 장애인들이나 집회 대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0-15분 정도 지나자 방화방면 열차에서 비장애인 도우미 한 명과 장애인 한 명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자 주변에 흩어져 있던 비장애인 도우미 3-4명이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선로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피의자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선로로 내리는 것을 도왔으며, 이후 다

음 열차가 차가 역구내로 들어오다가 멈추어 섰으며, 피의자는 이후 약 5분 가량 선로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함께 있던 도우미중 한 명이 “이제 비장애인 도우미들은 선로 밖으로 벗어나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피의자와 다른 비장애인들은 모두 선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로 위로 올라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형사로 보이는 듯한 한 사람이 다가와 피의자를 연행하려 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피의자는 건너편 방향에 도착한 상일동행 열차를 타고 광화문 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피의자가 당일 시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당일의 상황입니다.

4. 마치며

가. 우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실과 그 문제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삶을 규제하고 어떻게 생명마저 위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피의자가 이 선로점거 사건에 참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대 장애인이동권의 현실과 그 문제의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20분만에 마무리되었고, 누가 다치거나 기물이 손괴된 사실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 8. 12.

피의자 김도현 (인)

서울 종로경찰서 귀중

김도현 동지의 구속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입장

1.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점거 시위와 관련하여 김도현 동지에게 기어코 구속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이번 구속사태를 김도현 동지 개인이 아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체에 대한 비열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김도현 동지의 석방을 위해 그리고 동지의 바램이기도 했던 장애인이동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서두에 밝힌다.

2. 장애인이동권투쟁의 한 계기가 되었던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박소엽씨 추락 사망사고 이후에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의 죽음과 사고의 행렬은 끊이지를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당국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시설의 미비와 관리의 소홀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불합리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올해 5월 14일, 송내역에서의 장영섭씨(시각장애 1급, 58세) 추락 사망사건 이후에도 정부당국의 이러한 기만과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우리의 절박함과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투쟁으로서 광화문역 선로 점거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3. 김도현 동지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 장애인 노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 그리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등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의 곁에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동지였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와중에 지난 2001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刑)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운동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제를 진보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 2월부터는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근연구원으로 일해왔던 것이다.

하기에 동지는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에 대해 일상적으로 논의하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이번 투쟁에 대한 사전 공모와 주동자의 혐의를 덧씌우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 왔으며, 또한 수사의 과정에서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느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 주체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분열시키며,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로 우리 운동의 정당한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비열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4. 또한 이 땅의 사법부는 장애인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아만적인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러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던 김도현 동지를 편파적인 법 적용을 통해 빼앗아 가고야 말았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정당한 권리의 확보를 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만 휘둘러지는 그러한 법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사법부와 검찰은 김도현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장애인 주체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우롱했던 발언에 대해 450만 장애인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만일 그렇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제 장애인 단체들은 우리의 투쟁에 연대해왔던 모든 인권·노동·학생단체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치열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03년 8월 20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